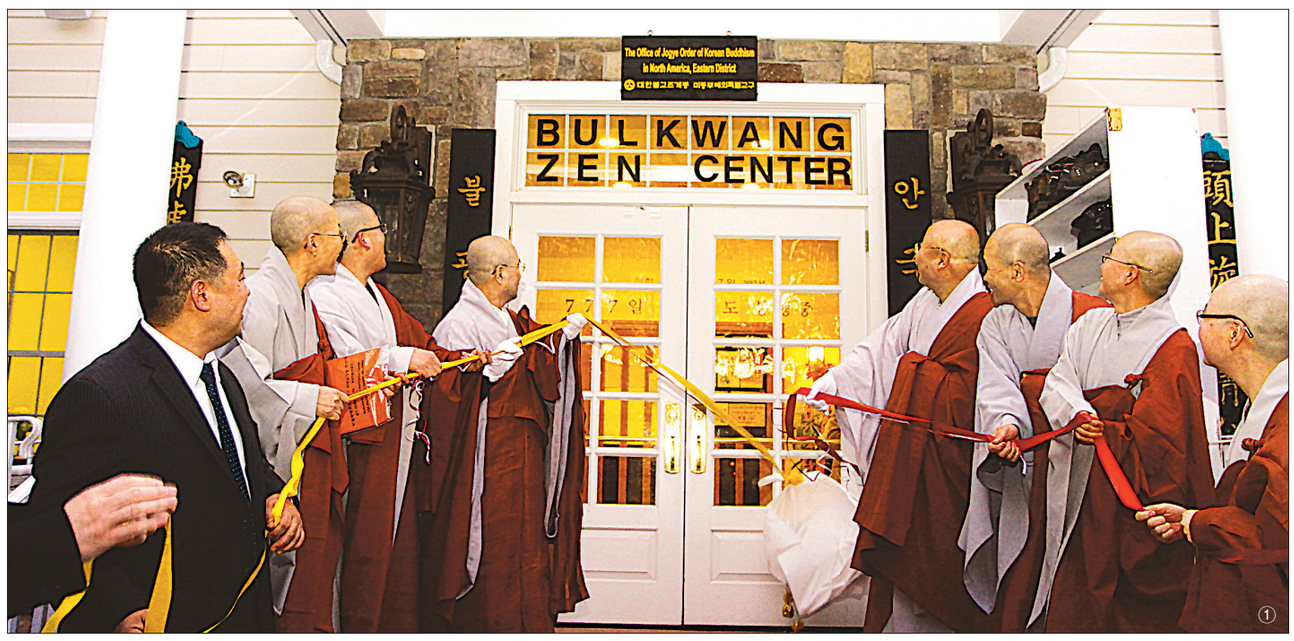
2005년 법장스님 첫 공식 발언…5년 뒤 법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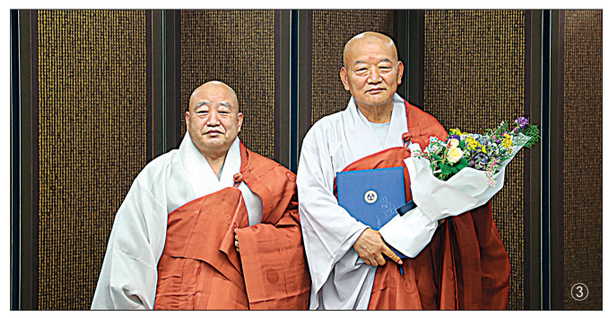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법제정 과정 및 경과
5.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①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미국 동부해외특별교구. 법개정으로 현재는 지회로 운영중이다. ②2005년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은 처음 공식석상에서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언급했다. ③지난해 해외특별교구장에 임명된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
미국서 중 · 동부스님과 간담회
다양한 어려움 · 고충들은 이후
'해외특별교구' 설치 공식 약속

'해외특별교구' 와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종단 최초로 공식 언급한 사람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1941~2005)이다. 2005년 5월경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동부 · 중부 승가회 스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법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해외특별교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60~1970년대 이후 전세계에 한국사찰이 창건돼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은 시점인 셈이다. 당시 해외사찰은 종단 차원에서 건립되기보다 개인 원력에서 출발한 사찰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종단이 해외사찰 관리 및 교류에 관한 문제를 종무행정의 틀 속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민하기까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소요됐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국 동중부 승가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은 동중부 지역의 승가회장이었던 도범스님(보스턴 문수사 주지), 휘광 스님(뉴욕사원연합회장), 원영 스님(뉴욕 보리사 주지) 등과 만나 현지 사찰들의 사정과 요청 등을 가감 없이 듣고 고민했다. 뉴저지 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님들은 특히 해외포교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다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였다.

또 스님들은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 △종단 출가연령 제한 폐지 △뉴욕한국불교문화원 건립 등을 제안했는데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 여부도 종무행정의 범주로, 큰 틀에서 해외특별교구의 역할에 포함됐다.

당시 종단은 해외사찰과의 기본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그 특성과 종무행정상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외사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국내스님들과 차이 없는 종법기준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해외 거주기간을 승가고시, 법계에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찰과 관련해서도 예 · 결산을 비롯한 행정처리를 한국사찰 기준으로 시행하는 데 대한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이날 동중부 승가회 스님들은 "해외 거주시 비구계나 3급 승가고시때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젊은 스님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현지 역시 포교할 수 있는 스님들의 수가 적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현지 스님들을 통해 해외사찰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해 들은 법장 스님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특별교구' 를 제시했다. 이는 미국 동중부 스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지만, 종단 입장에서도 해외사찰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05년 초 종헌에 군승특별교구(군종특별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에 법장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법적인 방안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특별팀을 발족시켜서라도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과 출가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승가교육제도 개선추진위와 교육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법개정에 대한 언급으로 대신했다. 당시 조계종의 출가 제한연령은 40세였다.

법장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통한 해외사찰들의 고충해결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갑작스레 입적하면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듬해인 2006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관 스님(1932~2012)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해외특별교구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스님은 특히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한국사찰이 많아진 만큼, 한국과 후원 및 유대감으로 종단과 사찰이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특별교구 설치는 물론,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단적 의지와 발맞춰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었다. 조계종 미주승가회 준비위원회가 창립해, 미국 전역에 흩어져있는 개별 사찰들의 구심점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미주승가회가 추진한 해외특별교구는 국제포교를 총괄 · 관리하는 '해외포교 총본산' 의 역할을 수행할 종단 공식기구다. 당시 해외 사찰에서 주지 교체시 빈번히 발생하던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계종 현지 비영리법인체' 형태로 해외특별교구를 창립해 재산권과 인사권, 감사권 등 일체 권한을 법인에 귀속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주승가회 상임공동회장 도현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미주승가회가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의 모체가 되어, 재산관리나 행정지도 등 조계종의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밝혔고 지관 스님은 "미주승가회의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화답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예방에 이어 "최대한 빨리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새겼고,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전해오는 등 '해외포교의 청신호' 로서 답보상태였던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다만 숭산 스님의 '世界一化' 원력을 계승한 홍법원이나 관음선종 등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사찰에 대해서는 고민의 지점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도 좀처럼 완성되지 못했다. 다만 지관 스님은 성과자료집을 통해 향후 과제로 '해외특별교구의 설치' 를 제시했다.

이어 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자승 스님은 지관 스님이 남긴 과제를 받아 무애 스님을 해회특별교구 특보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현실화에 착수했다.

32대 지관 스님도 지속 추진
33대 자승 스님 때 법제정돼
동부지회 출범 후 효과 미미
"실질적 적용 위한 변화 필요"

그리고 2010년 5월,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 이 입법예고됐다. 조계종은 입법공고에서 '종단이 해외포교와 한국불교 국제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한국불교 국제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포교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고 명시했다. 특히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 유도 및 등록사찰의 관리, 해외거주승의 승가위의 확립, 사찰의 재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법령의 골자는 해외교구본사를 총무원 총무부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외 현지에 지역별 · 국가별 사무소를 법인 형태로 개설할 수 있으며, 사찰 등록과 취소, 해외교규 재적승의 구성과 해외파견승, 해외교구본사 지위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됐다.

법제정에 이어 2011년 8월 조계종 첫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됐다. 처음 설립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등 미국 동부 16개 주와 온타리로, 퀘벡 등 캐나다 동부 6개 주를 관할지역으로 설립승인됐다.

초대 교구장 휘광 스님(불광선원 주지)은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그동안 해외사찰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며 "이제 종단과 해외 스님들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만큼 해외특별교구가 해외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도 "그동안 미국에서의 포교는 스님 개인의 원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해외교구가 설립됐으니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조계종은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지속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해외교구 설립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미국 외 지역이나 교구 활성화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2017년 조계종은 침체되고 답보상태에 빠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이 해외 현지에 국가별 · 지역별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하는 시스템인 데 반해, 개정된 법안은 국내에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 지원 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는 지회로 변경됐다.

교구에 비해 지회 설립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법안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해 관할 범위내 등록사찰 10개 이상, 조계종 소속 승려 20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지회는 이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였다. 해외특별교구장은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지회 설립 절차 및 해외지회장 선출, 해외사찰 등록 및 주지 품신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사무처를 국내에 둬 종무행정과의 연관성 및 현실 적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개정에 따른 해외포교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되레 해외사찰 현지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불교의 해외포교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해외사찰 · 스님 관리 및 지원, 인력활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특별교구법과 그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김태호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1년 3월 첫째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